

제출서류		내 용	발 급 처
공통	주민등록표등본 *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	-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-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별도 제출	행정복지센터
	가족관계증명서 * 주민번호 공개 발급	-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	
	개인정보 이용·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-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·날인	첨부양식

해당시	대학생 증명서류 (만 19세 미만,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)	- 재학증명서(재학생) 또는 휴학증명서(또는 재적증명서) (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) - 신입생 :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※ 단,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,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,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(주민번호 미기재 가능) - '23년 복학예정자 : 휴학증명서(또는 재적증명서), 복학확약각서(공사 첨부양식) (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)	각 학교 발급양식 등
	수급자 증명서	-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	행정복지센터 등
	한부모가족 증명서	-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	
	차상위계층 증명서	- 차상위계층 확인서, 복지대상급여(변경)신청결과 통보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,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,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(자활근로자 확인서),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,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	
	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(부모가 이혼한 경우)	- 부모님 이혼으로 한 분을 가구에서 제외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	
	주민등록표초본(본인, 부모) (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, 부모가 이혼한 경우)	-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 한하여 초본 첨부 * 상세유형, 주민번호 공개발급 ※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	
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(만 19세 미만,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)	-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-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- '23년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-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	각 학교 발급양식 등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주민번호 공개 발급 (만 19세 미만,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)	-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	건강보험공단	